

'92 도유 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

의안 번호	37
----------	----

제출년월일 : 1991. 1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도유재산의 보존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92 도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유재산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도유재산의 취득및 매각에 대한 계획

가. 취득및 처분재산의 표시

1) 일반회계

(가) 취득재산

- 공영개발사업단 청사신축용지 매입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청주시 가경2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주상준용지 (58브릭) 1,984㎡ 900,000천원

- 보건환경연구원 사무실및 시험실 증축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청주시 송정동 140-50번지 910.8㎡ 600,000천원

- 대체재산조성부지 매입

대상지 조사후 확정 1,355㎡ 271,000천원

(나) 매각재산

- (주) 신일건업 상가아파트 신축부지내 도유잡종재산

청주시 남주동 450번지와 2필지 39.9㎡ 21,546천원

2) 특별회계

(가) 취득재산

○ 도유임야 확대계획에 의한 임야매입 (도유림사업소 소관)

- 임야매입 1 필지 200,000㎡ 150,000천원

(나) 매각재산

○ 도유림관리 특별회계 재산증식을 위한 임목매각 (도유림사업소 소관)

- 임목매각 4 필지 6,022㎡ 150,550천원

나. 취득및 처분의 사유

1) 일반회계

(가) 취득재산

○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청사신축용지 매입

- 청주 가경2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여객터미널과 상업지구 인근에 공공부지 확보로 공영개발사업단 청사를 신축코자 함.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사무실및 시험실 증축

- 청사내 사무실및 시험실을 증축하여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함

○ 대체재산 부지매입

- 매각재산에 상응한 재산확보로 효율적인 도유재산 관리운영

(나) 매각재산

○ 도유잡종재산 매각(청주시 남주동 450번지외 2필지)

- 청주시 남주동 구 청과물시장내 도심의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상가아파트 신축단지로서 책정 추진중인바 단지내에 도유재산이 편입되는 관계로 사업이 지연된다는 청주시장의 의견과 주민의 여론이 있어 주민의 여론을 해결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키 위하여 매각코자 함

2) 특별회계

(가) 취득재산

○ 임야매입

- 도유임야 확대계획에 의한 재산증식

(나) 매각재산

○ 입목매각

- 영림계획에 의거 입목매각으로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재산증식

3. 제안근거

- 지방지정법 제77조 제1항
- 지방지정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및 제39조
-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9조

4. '92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 별 첨

5. 관계법령 발췌 : 별 첨

6.참 고 자 료 : 별 첨

一 般 會 計

- '92 取得對象財産
- '92 賣却對象財産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92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7-1)

충청북도(외계명 : 일반외계)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취	합	토 지	1	1,355	271,000	1	1,984	900,000	2	3,339	1,171,000
		건 물				1	910.8	600,000	1	910.8	600,000
	기 타										
투	1. 매	입	1	1,355	271,000	1	1,984	900,000	2	3,339	1,171,000
		토 지				1	910.8	600,000	1	910.8	600,000
		건 물									
투	2. 교관으로 취득	토 지									
		건 물									
투	3. 기 타	취 득									
		토 지									
투		건 물									
		기 타									
취	합	토 지	1	39.9	21,546				1	39.9	21,546
		건 물									
	기 타										
	4. 매	각	1	39.9	21,546				1	39.9	21,546
투	5. 양	어									
		토 지									
		건 물									
	6. 교관으로 처분	토 지									
		건 물									
		기 타									
	대부 및 사용자	토 지									
		건 물									
		기 타									

'9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7-2)

충청북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 정 가 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 성명
	지 목	소 제 지	수 량				
1	대 지	청주시 가경2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주상혼용지 (58브릭)	1,984	900,000	'92.7-10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청사신축용지	○ 매 입
2	·	대상지 선정 조사우 확정	1,355	271,000	'92.3- 6	대개계산 조성	○ 매 입
3	건 물	청주시 송경동 140 - 50	910.8	600,000	'92.8- 10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사무실및 시험실 증축	○ 증 축
계	토 지 건 물	2 필 지 1 동	3,339 M ² 910.8M ²	1,171,000 천원 600,000 천원			

※ 추정가액 : 일련번호 1번은 공영개발단에서 책정 예정금액,
2번은 매입예상액,
3번은 건물 증축 예상액.

92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7-4)

충청북도 (외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매각대상수량	과표 또는 평가액	매각시기	매각사유	매수 희망자 주소, 성명	
	지 목	소 재 지						일단의 수량
1	대 지	청주시 남주동 450	18.8	18.8	10,152	'92. 1- 4	상가아파트 신축단지 편입용지	0. 서울 강남구 삼성동 8-5 (주) 신일건설 대표 주 의 수
	"	청주시 남주동 452 - 1	18.2	18.2	9,828	"	"	
	"	청주시 남주동 451 - 1	2.9	2.9	1,566	"	"	
계		3 필지	39.9	39.9	21,546			

※ 과표 또는 평가액은 91년도 공시지가액임.

特 別 會 計

○ 公有林野管理特別會計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92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7-1)

총칭부도 (외계명 : 공유림관리 특별외계)

(단위 : 평,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취	합 계	토지			1	200,000	150,000	1	200,000	150,000
		건물								
		기타								
부	1. 매 입	토지			1	200,000	150,000	1	200,000	150,000
		건물								
		기타								
취	2. 고관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부	3. 기 타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취	합 계	토지	5	6,022	150,550			5	6,022	150,550
		건물								
		기타								
부	4. 매 각	토지	5	6,022	150,550			5	6,022	150,550
		건물								
		기타								
부	5. 양 의	토지								
		건물								
		기타								
부	6. 고관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대부 및 사용허가		토지								
		건물								
		기타								

9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7-2)

충청북도 (외계명 :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 득 재 산 소 유 자 주소, 성명
	지 목	소 재 지	수 량				
1	임 야	대상지 선정 조사항 확정	200,000	150,000	'92.5 -10	재산증식(동유임야 확대)	0. 협의대입
			200,000	150,000			

92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7-4)

충청북도 (외계명 : 공유림관리 특별외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매각대상수량	과표 또는 평가액	매각시기	매각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 성명
	지 목	소 재 지	일단의 수량					
1	입 목	괴산군 장연면 방곡리 산49-4	260 M ³	낙엽송260 M ³	6,500	'92.1-6	영림계획에의한 벌채	0.공개경쟁 입찰
2	"	괴산군 연풍면 분지리 산 22	1,000	소나무의 2종 1,000 M ³	25,000	"	"	"
3	"	제천군 백운면 덕동리 산90-1	990	소나무의 2종 990 M ³	24,750	"	"	"
4	"	제천군 백운면 덕동리 산90-1	712	소나무의 2종 712 M ³	17,800	"	"	"
5	"	제천군 백운면 방악리 산124-1	3,060	소나무의 2종 3,060 M ³	76,500	"	"	"
계	입 목		6,022 M ³	6,022 M ³	150,550			

관 계 법 령 발 행

地 方 財 政 法	지 방 재 정 법 시행령
<p>第77條(公有財産의 管理計劃)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소관의 財産과 事業決定에 따라 年別 公有財産의 取得·管理 및 處分에 關한 計劃(이하 "管理計劃"이라 함다)을 擬定하여 地方團體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p> <p>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管理計劃에 따라 公有財産을 取得·管理 또는 處分하여야 하며, 그 管理處分結果를 審査·分析하여야 한다.</p> <p>③ 第1項 및 第2項의 管理計劃과 處分結果는 大統領을 어 경하는 바에 따라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市·廳知事에게, 市·廳에 있어서는 內務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p>	<p>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 77 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5 조제 1항제 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p> <p>② 법 제 77 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처분결과의 보고내위, 시시등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p>

공 유 재 산 관 리 조 제	공 유 재 산 관 리 조 제 시 행 규 칙
<p>제 87 조 (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 77 조 및 법 제 84 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전년도 12월 31 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도중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위법 제 7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받은 재권부지 취득과 동 재산을 양여취지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과 가격을 달래연도 12월 31일까지 일괄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림아관리 특별회계 전담부서의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88. 5.19)</p> <p>제 88 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공유재산을 취득·처분·교환·동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결을 요청할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시식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88. 5.19)</p>	<p>제 88 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조제 제 39 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 (별지 제 13 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 16 호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 17 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 18 호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 19 호서식) (개정 '88. 5.27)

분류기호 문서번호	관제 22400	기안유지 (전화: 55 8812)	시행상 특명취급
보존기간			
수신처 보존기간			
시행일자	1991.11		
보조 기관	부지사 국장 담당관	기획관리실장	문서동제
기획 안 자	공유재산 관리 실		발송인
경수 참 조	내부결재	발 신	
제 목	도정조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92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도정조정위원회 개최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개최일시 : 1991. 11. 20. 10:00			
2. 개최장소 : 부지사실			
3. 참석위원 : 11 명			
4. 심의내용 : 별첨			
첨부 : '92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내용 1부 "끝"			

議案番號	第 36 號	議決事項
議決年月日	1991. 11. 20 第 次 忠清北道政調整委員會議	

'92 道 有 財 產 管 理 計 劃 (案) 審 議



提 案 者	財 務 局 長 俞 義 在
提案年 月 日	1991. 11. 20

忠清北道政調整委員會 審議決定書

1. 議決主文

1991年 11月 20日 財務局長이 提案한 '92年 道有財産 管理計劃(案)에 對하여
아래와 같이 審議 議決한다.

2. 議決內容

○ 出席狀況

. 總 委 員 : 12 名
. 參 席 委 員 : 11 名
. 不 參 委 員 : 1 名

○ 議決狀況

. 可 : 11 名
. 否 : 1 名

1991年 11 月 20 日

忠清北道政調整委員會委員長 洪 舜



議 決 調 書

區 分	職 位	姓 名	議 決		
			原案承認	調整承認	不承認
委員長	副 知 事	洪舜基	[Handwritten Signature]		
副委員長	企劃管理室長	羅基正	[Handwritten Signature]		
委 員	內 務 局 長	郭昭烈	[Handwritten Signature]		
	財 務 局 長	俞義在	[Handwritten Signature]		
	保社環境局長	金容惠	[Handwritten Signature]		
	家庭福祉局長	張祥子	[Handwritten Signature]		
	農漁村開發局長	柳丙鉉	[Handwritten Signature]		
	農林水產局長	趙容權	[Handwritten Signature]		
	地域經濟局長	金東琦	[Handwritten Signature]		
	建設都市局長	金鍾聲	[Handwritten Signature]		
	民防衛局長	全錫祚	해외출장		
	企劃擔當官	崔敬住	[Handwritten Signature]		

□ . 안 건 : '92 도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내용

1. 목 적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도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1992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도정조정위원회에 상정 심의코자 합니다.

2. 기본방침

- 도유재산 관리계획은 회계별로 연간계획을 수립한다
- 도유재산은 보존 및 확대위주로 관리하고, 특히 행정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재산일지라도 장래 활용이 예상되는 재산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보존위주로 관리한다
- 도유재산의 매각은 법상 매각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매각 재산에 대하여는 대체재산을 확보토록 한다

3. 심의내용

- 도유재산의 취득·매각에 관한 사항 심의

4. 자산의 표시

(1). 일반회계

▣. 취득및 처분내역

(단위:㎡/천원)

구분	취 득			처 분			증 감			비 고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계	3	4,249.8	1,771,000	1	39.9㎡	21,546	2		1,749,454	
토지	2	3,339.0	1,171,000	1	39.9㎡	21,546	1	3,299.1	1,149,454	
건물	1	910.8	600,000	-	-	-	1	910.8	600,000	

【 취득자산 】

○ 공영개발사업단 청사신축용지 매입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 청주시 가경2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주상혼용지(58브릭) 1,984㎡ 900,000천원

○ 보건환경연구원 사무실및 시험실 증축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청주시 송정동 140 -50번지 910.8㎡ 600,000천원

○ 대체재산조성 부지매입

- 대상지조사후 확정 1,355㎡ 271,000천원

【 매각자산 】

○ (주) 신일건설 상가아파트 신축부지내 도유잡종재산

- 청주시 남주동 450번지 외 2필지 39.9㎡ 21,546천원

(2). 특별회계(공유림관리 특별회계)

▣. 취득및 처분내역

(단위:㎡/천원)

구분	취 득			처 분			증 감			비 고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계	1	200,000	150,000	5	6,022㎡	150,550	4		△ 550	
토지	1	200,000	150,000	-	-	-	1	200,000	150,000	임야매입
기타	-	-	-	5	6,022㎡	150,550	△ 5	6,022	150,550	입목매각

【 취득재산 】

○ 도유임야 확대계획에 의한 임야 매입 (도유림관리사업소 소관)

임야매입 1 필지 200,000㎡ 150,000천원

【 매각재산 】

○ 도유림관리 특별회계 재산증식을 위한 입목매각 (도유림관리사업소 소관)

- 입목매각 4 필지 6,022㎡ 150,550천원

【취 득 처 분 사 유】

가. 취 득 재 산

1) 일반회계

○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청사신축용지 매입

- 청주 가경2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여객터미널과 상업지구 인근에 공공부지 확보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사무실및 시험실 증축

- 청사내 사무실및 시험실을 증축하여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함

○ 대체재산 부지매입

- 매각재산에 상응한 재산확보로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도유재산 보존관리

2) 특별회계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 임야매입

- 도유임야 확대계획에 의한 재산 증식

나. 매 각 재 산

1) 일반회계

○ 도유 잠종채산 매각 (청주시 남주동 450번지의 2 필지)

- 청주시 남주동 구청과시장내 도심의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상가아파트 신축단지토 책정 추진중인바 단지내에 도유재산이 편입되는 관계로 사업이 지연 된다는 청주시장의 의견과 주민의 여론이 있어 주민의 여론을 해결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키 위하여 매각코자 함

2) 특별회계

○ 임목매각

- 영림계획에 의거 임목매각으로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재산증식

5. 제안자 의견

공유재산의 보존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92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본안과 같이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